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이 운영되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독거노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2조)
- 나. 공동시설등록 시 신청서류 및 등록필증 발급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3조)
- 다. 시설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라. 운영비 등 실제 지원시기와 지원내용을 현행과 일치시켜 행정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제 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본예산 27백만원 예산반영
- 다. 협의 등
 - 1)부패영향평가/심사규제 : 원안동의
 - 2)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15. 6. 9. ~ '15. 6. 29.)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의 제목 “(공동시설등록)”을 “(공동거주시설 등록)”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1호서식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시설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비
2. 재난·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년도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매년 11월 중)
2. 보험 가입(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시설 개보수비(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 전북임실-공동거주-0000-00호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등록필증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변 경 사 항

일 자

기재 사항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일 자	기재 사항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p> <p>가. ~ 다.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u></p>
<p>제3조(공동시설등록)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1호서식의“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u>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조(공동거주시설 등록) ① ----- -----<u>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u>-----.</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p>
<p>제4조(등록기준) ① 제3조에 따른</p>	<p>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p>

공동시설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등록한다.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②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등록통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비
2. 재난·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시설지원)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거주시설의 재난·재해에 따른 보험료 가입 경비
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5. 그 밖의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7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및 방법)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는 매년 1월과 10월 연 2회 지급
2. 냉방비는 매년 6월중 연 1회 지급
3. 기타 운영비와 공공요금은 매월 초에 지급
4. 보험료 가입은 등록된 날부터

제6조(지원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년도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매년 11월 중)
2. 보험 가입(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시설 개보수비(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삭 제>

군에서 일괄 가입

5. 시설개보수, 보완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1. 재정수반요인

-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